



장쩌엔핑 상업비밀침해죄 사건

50

01 서지 사항

국가 법원	저장성 윈조우시 중급인민법원	사건번호	(2014)浙温知刑终字第3号
판결 일자	2014년 9월 1일	판결 결과	상소 인용(상업비밀침해죄 성립, 권리자 승)
원심자소인(상소인)	윈조우시 동오우웨이콩꾸어뤄 유한공사		
피고인	장쩌엔핑		
참조 법령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205조, 최고인민법원의 형사소송법 활용에 대한 해석 제264조		
영업비밀	기계관련 기술비밀 및 경영정보		
키워드 (Keyword)	자소(自诉), 범죄의 증거(罪证), 공동 범죄인(共同犯罪人), 고의(故意)		

02 사건 개요

원심 자소인 동오우웨이콩꾸어뤄 유한공사는 기계 제작업 등에 종사하는 회사이고, 장쩌엔핑은 공사의 전 직원이었는데, 사건 외 후쑹미아오, 루안모, 천모와 공모하여 자소인 공사의 핵심기술, 경영정보 등을 획득하여 쑤조우 형얼 기계 제조 유한공사를 설립하였다. 또한, 장쩌엔핑은 쑤조우 형얼 기계 제조 유한공사에서 자소인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관련 기술에 대해서 특허 및 실용신안권 출원을 하여 권리 등록을 받았다.

이에, 자소인은 피고인을 후쑹미아오, 루안모, 천모와 함께 상업비밀 침해죄로 공안당국에 고발하였고, 인민검찰원은 후쑹미아오, 루안모, 천모에 대해서는 루청구 인민법원에 상업비밀침해죄로 기소하였으나, 본 사건 피고인 장쩌엔핑에 대해서는 증거부족으로 불기소 통지하였다.

이에, 동오우웨이콩꾸어뤄 유한공사는 인민법원에 직접 자소하였고, 1심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자소인의 자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자소인이 불복하여 상소한 것이다.

03 주요 쟁점

원심 자소인(상소인)	⇔	피고인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다.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
공동 범죄의 주관적 고의가 확인된다.		객관적 범죄행위가 없다. 범죄행위의 주관적 고의가 없다.

04 판결 요지

상소인 동오우페이콩꾸어뤄 유한공사가 1심 기간 동안 제출하고, 원심법원에 증거 조사를 신청한 것과 공소사실은 관련성이 있고, “충분한 증거를 구비하면 응당 심리를 개시하여야 한다”는 자소 안건의 절차 요구에 부합한다.

상술한 증거는 응당 법정 심리에 출시되고 대질조사 해야 하며, 본 사건은 관련규정을 고래해 판결을 내려야 한다.

원심 법원이 범죄의 증거가 결여되어 있다는 이유로 기소를 기각한 것은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므로 원심 형사결정을 취소하고, 원조우시 루청구 인민법원이 계속 본 사건을 심리할 것을 지정하고 명령한다.

05 Key Point

중국 형사절차 특유의 제도로 자소제도가 있다. 검사가 법원에 제기하는 공소에 대비되어, 피해자가 인민법원에 직접 고소하고 인민법원에서 직접 이를 수리하여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자소’라 한다.

본 사건은,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법원에 자소를 하였고, 원심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상소하여 자소청구가 받아들여진 사건이다.

중국에서 상업비밀침해를 당한 한국기업이 상업비밀침해 문제를 형사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경우 공안기관이나 검찰원에서 기소하지 않더라도 당사자가 직접 인민법원에 자소하는 방법으로 침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음을 숙지할 필요가 있겠다.